

# 투자협약서

주식회사 인산가(이하 “투자기업”)와 경상남도 및 함양군은 상호 간에 투자와 고용 및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,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투자기업”의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의 원활한 투자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,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상호 간 공동 이익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(협약내용)

1. “투자기업”은 경상남도 함양군 인산죽염향노화지역 특화농공단지 내 약 212,146㎡ 부지에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하며, 경상남도 또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자 중 45명을 우선 고용하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.
2.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“투자기업”의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·허가 등 행·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.

## 제3조(분쟁해결)

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

## 제4조(기밀유지)

본 협약 각 당사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“투자기업”의 영업비밀, 사업 진행단계 등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### 제5조(유효기간)

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단,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“투자기업”의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### 제6조(법적 구속력)

본 협약은 각 당사자 간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4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, 본 협약서를 근거로 어떠한 법률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### 제7조(기타사항)

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,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각 당사자들은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4월 4일



도지사 박완수



대표이사 김윤세



군수 진병영

박완수

김윤세

진병영